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3219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7 선고 2021나420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321930 판결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대 519㎡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519㎡ 중 1/6 지분에 관하여 전주시방법원 2018. 11. 16. 접수 제118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제2층에 관하여 2016. 9.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2. E, F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2017. 4. 3.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2) 위 서울 강남구 D 제2층의 매각에 관하여 원고는 B에게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93,006,660원을 고지하였다.

3) B는 자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대 519㎡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 처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서울 종로구 H 임야,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동 건물 및 그 대지, K은행 예금채권, L은행 예금채권 등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양도소득세 채무, 지방세 채무, 주식회사 L의 양수인 M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O에 대한 채무, P조합의 승계인 Q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R의 승계인 Q에 대한 채무, S에 대한 채무, T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 등 채무의 합계가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는바(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193,006,660원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처로서 B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나 그 전에 피고가 B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피고가 B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의 B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재경